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10. 4 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10. 4

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도시산업위원회(96.10.17)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신용은 지적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(대통령령제15093호-96.6.29)에 따라 구토지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함.
- 당연직 위원수 6명을 5명으로, 위촉위원수 8명을 9명이내로 조정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 제15093호에 의거 개정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